

[일련번호 : 5]

양 천 구

시 정 요 구

제 목 자치회관 시설 사용료 구세입처리 지연 및 사용료 환불처리 미흡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내 용

1. 업무개요

△△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회관 시설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에 따르면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구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의하면 “사용료의 납무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수입금 출납원이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을 직접 수납한 경우에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또

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자치회관의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자치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시설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환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동은 자치회관 시설 사용료에 대한 구 세입처리를 최소 3일에서 최대 56일 지연하여 처리하였으며(7건), 1건은 사용료를 규정보다 20,000원 과소 부과함. 또한 시설 사용 전 사용료를 미리 받지 않고 사용 후 납부받거나, 시설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 환불처리를 하지 않고 미사용건에 대해 임의로 익월 신청에서 상계처리하는 등 자치회관 시설 사용료 업무를 부적정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금 처리 등 부적정 내역

연번	사용자명	신청일	사용기간	사용료(원)	세입처리	지적사항
1		23.2.2.		32,000	23.2.13.	세입처리 지연(6일)
2		23.3.22.		28,000	23.3.23.	시설사용 후 사용료 납부
3		23.5.12.		18,000	23.5.31	세입처리 지연(11일)
4		23.5.17.		16,000	23.5.31.	세입처리 지연(8일) 및 시설사용 후 사용료 납부
5		23.6.8.		48,000	23.6.8.	시설사용 후 사용료 납부
6		23.6.28.		56,000	23.7.3.	시설사용 후 사용료 납부
7		23.6.27.		135,000	23.7.3.	세입처리 지연(3일)
8		23.6.2.		81,000	23.7.7.	7월 신청한 사용료와 합산하여 납부처리
9		-		80,000	23.8.7.	사용 신청서 미작성
10		-		20,000	23.8.22	사용 신청서 미작성
11		24.1.31.		85,000	24.1.31.	20,000원 과소 부과 (15,000원*7회=105,000원)
8		24.3.21.		120,000	24.3.21.	시설사용 후 사용료 납부
9		24.4.12.		280,000	24.4.23.	세입처리 지연(6일)
10		24.6.3.		40,000	24.6.3.	미사용일 환불처리 미흡 (이월)
11		24.6.11.		260,000	24.8.30.	세입처리 지연(56일)
12		24.7.25.		480,000	24.7.26.	7월 미사용일(2일) 환불처리 미흡 (8월 사용료에서 7월 미사용료분 차감 후 수납)

연번	사용자명	신청일	사용기간	사용료(원)	세입처리	지적사항
13	김은영	24.9.26.		140,000	24.9.26.	9월 미사용일(3일)환불처리 미흡(10월 사용료에서 9월 미사용료분 차감 후 수납)
14	김은영	24.10.21.		500,000	24.11.5.	세입처리 지연(10일)
15	홍애경	24.12.30.		45,000	25.1.2.	12월미사용일(4일)환불처리 미흡(25년 1월 사용료에서 24.12월 미사용료분 차감 후 수납)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동장은

과소부과한 시설 사용료 20,000원을 추징하시기 바라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고, 자치회관 시설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정)